

경찰서 유치장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유치인의 인식연구

A Study of Detainees' Perceptions of the Detention Facilities of the Police Station and their Operation

정우열* · 박동균** · 김도균***

〈목 차〉

I. 서 론	III. 인식분석
II. 이론적 배경 및 분석의 틀	IV. 요약 및 결론

〈요 약〉

본 연구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 유치인들의 인식분석을 통하여 유치장의 시설 및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 경찰서 유치장 시설에 대한 유치인 인식조사 결과에 따른 정책적 제언은 첫째, 유치장 구조는 인권친화적인 일자형으로 배치하고, 여성·남성·장애인·소년범 등의 피의자를 차별하여 유치할 수 있는 유치장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둘째, 유치실 외부에 목욕장과 세면장 시설을 유치인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비상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비상구를 설비해야 하며, 수용된 유치인수와 내부면적을 고려하여 소화기를 충분히 비치해야 할 것이다. 넷째, 외부의 공기를 유치장 내부로 순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의 창문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인공조명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자연채광을 확보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유치장 내 냉·난방 시설은 유치인의 수와 규모에 합당한 시설을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서 유치장 운영에 대한 유치인 인식조사 결과에 따른 정책적 제언은 첫째, 유치장 운영의 문제는 낙후된 유치장 시설과 함께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빠른 시일 내에 예산확보 등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둘째, 낡고 오랜 된 책들은 폐기하고, 독서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는 잡지 등을 구비하는 것이 요구되며, 유치

* 경운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강사

된 피의자 중에는 생계가 곤란한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본적인 생필품 등은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영치물품의 관리는 모든 경찰서 유치장에서 동일한 제목의 서류와 양식으로 관리 되어져야 하며, 여성유치보호관 인력을 확충하여 여성 유치인들에 대한 신체검사 및 송치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을 위해 구비된 목발이나 휠체어, 이동식 좌변기 등과 같은 장애인관련 시설물들을 잘 관리하고 보관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유치장, 구치소, 유치인, 인권, 보호실, 대응감방

I. 서 론

경찰서 유치장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의 피보호 요건을 갖춘 자를 보호하는 보호실과는 달리 형사사법 작용의 하나로서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구금하는 장소이다. 이는 피의자가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정신적·신체적 불이익 등 인권 침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피의자의 유치와 관련하여 신체검사, 구금, 처우 등에 있어서 인권침해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이 구금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법률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더구나 수사당국에서 유치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현재 유치장은 시설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유치장 피구금자의 처우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권용보 외, 2002 : 4-6). 특히 대용감방의 경우 유치장 운용 예산과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노후된 건물과 각종 부대 시설이 낙후하여 재소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4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대용감방의 운영을 조속히 법무부로 이관하고 특히, 경찰청장에게는 대용감방 이관 시까지 인권침해 소지를 해소하도록 권고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북지방경찰청에서는 2005년에 「시민인권보호단」을 구성하여 경찰서 유치장 시설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유치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활동을 통하여 경찰서 유치장 시설 및 운영체제를 향상시키고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피고인 및 재소자에 대한 인권보호는 한 국가의 인권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고시면, 2004 : 169). 특히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 유치인을 대상으로 인권침해의 사례들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인 경북지방경찰청 산하 23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 유치인의 인식분석을 통하여 유치장의 시설 및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유치인들의 인식을 통하여 경찰서 유치장 시설 및 운영상에서 초래되는 인권침해의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유치장 운영에 있어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 『유치장설계표준규칙』 그리고 『피구금자의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등을 기초로 하여 표준화된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2005년 6월 16일에서 9월 23일까지 경북지방

경찰청 소속 23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 유치인들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및 분석의 틀

1. 경찰서 유치장의 의의

1) 경찰서 유치장의 개념

유치(留置)는 피의자, 피고인, 구류인 및 의뢰 입감자 등의 도주, 증거인멸, 자해 행위, 통모행위, 도주원조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동시에 유치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을 말하며, (임준태, 2001: 432) 유치장(留置場)은 형사피의자 · 형사피고인, 형벌로서의 구류(拘留)를 받은 자, 또는 다른 수사기관의 의뢰 입감자 등을 대상으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구속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두는 구금 장소를 말한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의 미결구금 장소라는 의미에서 검찰이나 재판단계에서의 구금장소인 구치소와는 구별된다(장영민·박기석, 1995 : 169). 과거에 일부 경찰서 유치장은 기결수의 형집행을 위한 교도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 적도 있었지만, 유치장을 기결수용자 구금시설로서 활용하는 것은 본래의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장규원, 2000 : 27).

한편 유치장의 한 형태로 대용감방이 있는데, 이는 검찰 등 타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상 체포·구금된 피의자, 피고인을 기관협조 차원에서 대신 수용-의뢰입감-해주는 시설로서 일부 경찰관서에서 운용하고 있다. 말 그대로 ‘감방’ 기능을 대신 수행하는 것으로서 과거에는 기결수를 수용하였으나, 현재는 기결수는 수용하지 않고 있다(임준태, 2001 : 440).

2) 법적 근거

경찰서 유치장을 설치, 운영하는 법적 근거는 여러 법률에 의해서이다. 먼저 『경찰관집무집행법』 제9조에는 「경찰서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유치장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형법』 제68조에서는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미결수용실에 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7조 1항에 따르면,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유치장(지방해양경찰관서의 유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8조 2항에서는 「구류는 경찰서유치장·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집행하며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집행할 때는 검사가 이를 지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 훈령인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과 『유치장설계표준규칙』에서는 각각 피의자에 대한 유치장 유치 및 유치장 시설·관리에 대한 근거와 구체적인 시설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대용감방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적 근거로는 『행형법 제68조』의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미결 수용실에 준한다」라는 규정을 통하여 유치장을 교도소 및 구치소에 준하는 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리고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8조 2항』의 소정의 규정상 경찰서 유치장은 구류형 집행시설로 활용된다. 이 때의 유치장은 구치, 교도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셈이다. 경찰서 유치장이 미결수용실 내지 자유형 집행시설로서 활용되는 것이다.

2.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 분석의 틀

경찰서 유치장과 관련된 과거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형법학이나 경찰행정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다. 특히, 유치장에서의 알몸 신체검사 등이 뜨거운 이슈로 제기된 시점을 전후로 해서 이와 관련된 연구가 많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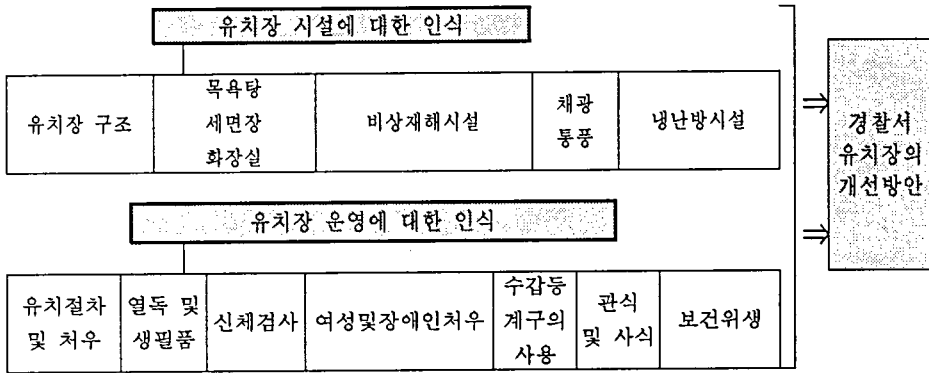
먼저 임준태(2002)는 주요 국가들의 경찰서 유치장의 실태를 분석하고, 우리 나라 경찰서 유치장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는 미국, 독일, 영국 등의 사례가 제시되어 있으며, 우리 나라의 유치장의 실태 및 문제점을 시설 및 인력배치, 관리부서, 인력의 전문성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수원(2002)은 경찰서 유치장을 사례로 하여 경찰의 인권 보호방안을 인권환경, 제도와 교육, 시설 등과 연계하여 제시하였고, 김형훈(2002)은 일본 경찰청의 사례를 들어 유치장의 실태를 홈 페이지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개괄적으로 소개하였다. 또한, 조국(2000)과 고시면(2002)은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형사피의자에 대한 알몸 신체 수색에 대하여 법률적 논쟁점을 들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신용혜(2005)는 현직 법무부 교정관으로서 경찰서 유치장 및 대용구치시설과 관련된 판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김태명(2004, 2005)은 미결구금 시설로서의 경찰서 유치장 제도의 개선방안을 일본의 사례와 법률적 개선방안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찰서 유치장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법률적이고,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최근에 진행된 선행연구들과 관련 법률 및 규정 등을 바탕으로 하여 표준화된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직접적으로 유치장에 수감된 유치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틀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1>과 같은데, 먼저 경찰서 유치장에 관한 유치인들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유치장 시설 측면과 운영측면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그림 1> 연구분석의 틀

Ⅲ. 인식분석

1. 유치장 시설에 대한 인식분석

1) 유치장 구조 및 형태

경찰서 유치장 구조 및 형태에 대하여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모든 경찰서 유치장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부채꼴 형태로 설비되어 있으며, 천장 높이가 실내바닥으로부터 3m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바닥 높이가 건축 지반면으로부터 0.45m를 지키고 있는 유치장은 일부 경찰서에 불과했으며, 본 규정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는 유치인 보호관들도 거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치장설계표준규칙』 제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경북지역 모든 경찰서 유치장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서 부채꼴 형태로 설치되어 있고, 이러한

구조물은 『유치장설계표준규칙』 제4조 2항에서 의해 「유치실은 간수의 감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고…」 라는 규정에 따라 유치인 보호관에 의한 「일망감시시설」로서의 기능은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유치장 시설이 부채꼴 형태로 되어 있으면 직사각형 구조물 보다 면적을 많이 차지하게 되고, 양 끝에 위치한 유치실이 서로 보여 인권침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여성 피의자와 남성 피의자를 분리하여 유치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여성 피의자는 양쪽 끝에 위치한 유치실 중 한 곳으로 유치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경우 반대쪽 유치실에 유치된 남성 피의자들로부터 성적인 모멸감을 받는 등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매우 큰 실정이다.

2) 목욕장, 세면장 및 화장실

목욕장은 유치실 출입문에서 출입하기 쉬운 위치에 설비되어 있는가?, 세면장은 수도 시설로서 세면 및 세탁을 할 수 있도록 설비되어 있는가?, 세면대 하부에 세면도구 등을 수납할 수 있도록 설비되어 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각 유치장 마다 목욕장과 세면장은 비교적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다. 방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경찰서에서는 유치실 내에 화장실 및 세면장을 함께 갖추고 있었으며, 유치인들은 주로 유치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세면장을 이용하여 세면과 목욕을 하고 있고, 유치실 밖에 설비된 목욕장과 세면장은 거의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성 유치인들의 경우, 유치실 내부에 있는 좁은 세면장에서 쪼그리고 앉아 목욕을 하고 있으며, 상주경찰서 유치장의 경우 여성 유치실 세면장에 이동식 칸막이 정도를 설치하였을 뿐이다.

목욕장과 세면장 사용에 대한 유치인들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언제나 자유롭게 씻을 수 있다.」가 88명(64%)이고, 「정해진 시간에는 자유롭게 씻을 수 있다.」가 14명으로 10%를, 「세면시설은 있지만 목욕시설은 없다.」가 23명(16%)의 응답 나타났다. 본 설문조사에서 「언제나 자유롭게 씻을 수 있다」나 「정해진 시간에는 자유롭게 씻을 수 있다.」라는 응답은 유치실 밖에 설비되어 있는 목욕장이나 세면장에서의 세면이나 목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유치실 내 세면장에서의

〈표 1〉 목욕장과 세면장 사용에 대한 유치인들의 인식

유치장에서 세수와 목욕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구분	빈도(명)	비율(%)
언제나 자유롭게 씻을 수 있다.	88	64%
정해진 시간에는 자유롭게 씻을 수 있다.	14	10%
씻는 것은 직원을 마음대로 이다.	0	0%
세면시설은 있지만 목욕시설은 없다.	23	16%
무응답	12	10%
합계	137	100%

세면과 목욕을 의미하는 것이며, 「세면시설은 있지만 목욕시설은 없다」가 전체 137명 중 23명으로 16%를 차지한 사실을 보더라도 유치실 밖에 설비된 목욕장과 세면장은 유치인들이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설비일 뿐만 아니라 설비된 사실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장실은 유치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가?, 대변소 2실 이상이 설치되어 있으며 소변소가 부설되어 있는가?, 차폐막(가리개)이 설치되어 있으며 수치심을 느낄 만큼 낮지는 않은가 라는 질문에 대해 경북지역 모든 유치장에서는 유치실 내부에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찰서에서 양호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다.

〈표 2〉 유치장 화장실의 위생 상태에 대한 유치인들의 인식

유치장 화장실의 위생 상태는 어떠합니까?		
구 분	빈도(명)	비율(%)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다.	66	48%
보통이다	58	43%
사용하기 싫을 정도로 더러워서 불쾌하다	8	6%
기 타	2	1%
무응답	3	2%
합 계	137	100%

유치장 내 화장실의 위생 상태에 대한 유치인들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다」가 66명(48%)를 차지했고, 「보통이다」가 58명(43%)의 응답을 나타냈다. 또한, 「사용하기 싫을 정도로 더러워서 불쾌하다」라는 응답도 8명(6%)이 응답했다.

2001년 7월 19일 헌법재판소는 유치장 화장실 차폐시설 미흡과 관련하여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유치인이 용변 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화장실 내 차폐시설을 화장실 바닥에서 1m 이상 설치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본 조사 결과, 청송 경찰서의 경우 유치인 감시를 위하여 차폐막 상단 중앙에 2개의 구멍을 뚫어 놓았으며, 울진 경찰서의 경우에는 내부가 보일 정도로 차폐막 문틈이 벌어져 있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북지역 대부분의 유치장에서는 화장실 바닥에서 1m 이상 설치 규정을 준수하고 있었다.

유치장 내 화장실 차폐막 설치에 대한 유치인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렇다」가 95명(69%)를 나타냈고, 「아니다」가 10명(7%)을 차지했다. 그러나 본 조사결과, 모든 경찰서에서 유치장 내 화장실에 차폐막이 설치된 것을 확인하였던 바, 차폐막이 미설치되었다고 응답한 유치인들은 차폐막(가리개)에 대한 명칭의 혼돈으로 인

한 것으로 보인다. 본 질문에 대한 응답 중 가장 주목한 부분은 「(차폐막이) 설치되어 있지만 수치심을 느낄 만큼 낮다」고 답한 유치인이 전체 설문 대상자 137명중에서 21명으로 15%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미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화장실 내 차폐시설을 화장실 바닥에서 1m 이상 설치하도록 한 2001년 7월 19일 헌법재판소 판결 및 이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수의 유치인들이 차폐막이 높이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 유치장 내 화장실 차폐막 설치에 대한 유치인들의 인식

유치장 내 화장실에 차폐막(가리개)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구 분	빈도(명)	비율(%)
그렇다	95	69%
아니다	10	7%
설치되어 있지만 수치심을 느낄 만큼 낮다.	21	15%
무응답	11	9%
합 계	137	100%

3) 비상재해 시설

유치장에는 비상재해에 대비한 경보벨, 소화기, 비상구 등이 비치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경보종의 경우 대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으며, 상황실로 직접 연락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비상구의 경우 영천, 경주 경찰서 등은 비상구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출입문을 비상구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소화기의 비치 여부에 대해서도 울진경찰서의 경우, 소화기가 1기 밖에 비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의성 경찰서의 경우에는 아래층과 위층에 있는 대부분의 유치인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층에서 소화기 3기가 비치되어 있는 반면 위층에는 1기만 비치되어 있었다.

4) 채광 및 통풍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3조 1항 및 『피구금자의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 제11조에는 각각 「유치인의 건강과 유치장내에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통풍, 채광, 구획면적, 설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피구금자가 기거하거나 작업을 하여야 하는 모든 장소에 창문은 피구금자가 자연광선으로 독서하거나 작업을 할 수 있을 만큼 넓어야 하며, 인공적인 통풍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인공조명은 피구금자가 시력을 해치지 아니라고 독서하거나 작업하기에 충분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영천·봉화·영양경찰서 유치장은 통풍이 아주 양호한 반면 포항남부·구미·상주·영덕

경찰서 유치장은 통풍이 열악하여 유치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었다. 특히, 울진 경찰서의 경우 정화조 시설이 유치장 부근에 매설되어 있어서 유치장에 들어서는 순간 악취가 진동하였으나 공기청정기 한 대만이 가동되고 있었다.

대용감방의 경우, 통풍상태는 더욱 심각하였는데 상주경찰서 대용감방의 경우 환풍기 시설의 부족으로 유치장 실내 공기가 상당히 탁하였으며, 유치인의 상당수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을 정도로 통풍에 문제가 있었다. 영덕 경찰서의 경우에는 공기청정기가 1층과 2층에 각각 1대씩 설치되어 있었고 몇 대의 환풍기가 가동되고 있었으나 2층의 경우 공기가 탁할 뿐만 아니라 1층에서 올라온 열기로 인해 상당히 더운 상태였다.

〈표 4〉 유치장 환기상태에 대한 유치인들의 인식

유치장 환기 상태는 어떠합니까?		
구 분	빈도(명)	비율(%)
환기가 잘 되고 실내공기가 맑다	36	26%
보통이다	70	51%
환기가 되지 않아 악취가 심하다	22	16%
무응답	9	7%
합 계	137	100%

유치장의 환기상태에 대한 유치인들의 응답결과를 보면, 「환기가 잘 되고, 실내공기가 맑다」가 36명(26%)를 차지했으며, 「보통이다」가 70명(51%), 「환기가 되지 않아서 악취가 심하다」가 22명(16%)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설문조사 당시 상당수의 유치장은 유치장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실내공기가 탁함을 느낄 수 있었고, 심지어는 악취가 심한 유치장도 일부 있었다.

채광 및 조명상태에 대한 유치인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 보면, 「적당한 밝기여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다」가 40명(29%)으로 나타났고, 「적당하다」가 47명(34%)를, 그리고 「너무 어두워서 생활하기 불편하다」가 32명(24%)를 차지하였다.

〈표 5〉 채광 및 조명상태에 대한 유치인들의 인식

유치장 조명상태는 어떠합니까?		
구 분	빈도(명)	비율(%)
적당한 밝기여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다	40	29%
적당하다	47	34%
너무 어두워서 생활하기 불편하다	32	24%
무응답	18	13%
합 계	137	100%

5) 냉·난방시설

냉·난방시설이 가동되고 있는가?, 유치장에 냉·난방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관내 모든 경찰서에서 냉방시설로는 에어컨을, 난방시설로는 보일러 온돌·전기판넬·난방기·온풍기 등을 갖추고 있어서 유치장 내 냉·난방에 대한 문제는 거의 없어 보였다. 공기청정기나 환풍기의 경우에도 경찰서 유치장의 규모에 따라 1~2대 정도를 구비하고 있었다.

냉방시설에 대한 유치인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 보면, 「일체의 냉방시설이 없다.」나 「냉방시설이 있으나 틀어주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유치인은 없었으며, 「냉방시설을 틀어 준다.」가 122명(89%)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시점이 여름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볼 때, 대용감방은 일반 유치장에 비해 냉방시설에 있어서 유치인의 수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즉, 영덕경찰서의 경우, 에어컨 1대가 1층에서 가동되고 있었으나 2층의 경우에는 선풍기 4대가 냉방시설의 전부였다. 또한 상주경찰서의 경우에도 환풍기 시설의 부족으로 유치장 실내 공기가 상당히 탁하였고 1층에는 에어컨 2대만이 설치되어 가동되고 있었다. 의성경찰서의 경우에도 상주나 영덕경찰서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다.

〈표 6〉 냉방시설에 대한 유치인들의 인식

냉방시설이 가동 되고 있습니까?		
구 분	빈도(명)	비율(%)
일체의 냉방시설이 없다.	0	0%
냉방시설이 있으나 틀어주지 않는다.	0	0%
냉방시설을 틀어준다.	122	89%
기타	3	2%
무응답	12	9%
합 계	137	100%

2. 유치장 운영에 대한 인식분석

1) 피의자 유치절차와 처우

형사범과 구류수, 20세 이상의 자와 20세 미만의 자, 신체장애인 및 사건관련 공범자 등이 분리 유치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모든 경찰서 유치장에서는 분리 유치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실제로 규정에 따라 본 사항에 대해서는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여성전용 유치실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여 대부분

의 경찰서에서는 여성전용 유치실이 존재하지 않거나 설사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타 유치실과 비교하여 볼 때, 시설과 운영 측면에 있어서 차이가 없었다.

경주경찰서의 경우, 총 4개의 유치실 중 2곳을 할애하여 각각 여성전용유치실과 소년범 및 구류수신체장애인 유치인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전용실임을 알리는 패찰을 달아 두었다. 또한, 구미경찰서의 경우 5번 유치실을 소년범전용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포항남부경찰서의 경우에는 전체 4개의 유치실 중 1번은 여성전용으로 2번과 3번은 남성전용으로, 그리고 4번은 소년범전용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용실이 타 유치실과 운영과 시설 측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고, 단지 전용실임을 알리는 패찰 정도만을 부착한 정도이므로 분리유치의 목적만을 충족하고 있다.

입감시 유치장 내 일과표, 접견, 연락절차,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찰서 유치장에서는 본 사항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유치장 벽면에 게시된 게시물로는 유치인 표준 일과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안내서, 식단표, 근무자 근무수칙 등이 부착되어 유치인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 경찰서의 경우 유치실에서 바라볼 때 보이지 않는 벽면에 게시물이 부착되어 있거나 구석진 곳에 부착되어 있어서 게시의 효과가 떨어져 보였다.

피의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변호사 접견권, 법률구조공단제도, 당직변호사제도, 법전의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많은 경찰서 유치보호관들은 변호사 접견권이나 당직 변호사제도 등에 대한 사항은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법률구조공단제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사례가 없었다고 대답하거나 어떠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지 알지 못하여 대부분의 유치보호관들은 본 제도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피의자 유치절차와 처우에 관한 유치인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 보면, 유치장 입감 시 「변호사 접견권」에 대해 자세히 고지 받은 경우가 49명(35%)를 나타냈고,

〈표 7〉 피의자 유치절차와 처우에 관한 유치인들의 인식

유치장 입감 시 피의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고지 받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구 분	빈도(명)	비율(%)
변호사 접견권	49	35%
법률구조공단제도	18	13%
당직 변호사제도	10	7%
법전의 활용 가능성	14	10%
아무것도 고지 받지 못했다.	40	29%
무응답	6	6%
합 계	137	100%

「법률구조공단제도」는 18명(13%)를, 「당직 변호사제도」는 10명(7%)를, 「법전의 활용 가능성」은 14명(10%)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아무것도 고지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전체 137명 중에서 40명(29%)이 응답하였다.

2) 열독 및 생활필수품 지급

법전의 활용 가능성과 관련하여 피의자가 요구하는 경우 법전이나 피의자 권리와 관련된 도서를 보여주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였으나 유치장 내 법전의 비치여부를 물어 보는 질문에 대해서는 성주·영덕·안동·청송·포항북부·칠곡·영양 경찰서 등은 유치장 내에 법전을 제대로 비치하고 있지 않았거나 유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유치장 외부에서 법전을 가져와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표 8〉 피의자 권리와 관련된 도서의 활용에 대한 유치인들의 인식

법전이나 피의자 권리와 관련된 도서를 요구하면 볼 수 있습니까?		
구 분	빈도(명)	비율(%)
그렇다.	56	40%
아니다.	33	24%
가능하지만 많은 시간이 걸린다.	12	8%
요구해 본 적 없다.	30	22%
무응답	6	6%
합 계	137	100%

피의자 권리와 관련된 도서의 활용에 대한 유치인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 보면, 「그렇다」라는 긍정적인 대답이 56명(40%)를 차지했고, 「아니다」라는 응답이 33명(24%)를, 「가능하지만 많은 시간이 걸린다」가 12명(8%)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법전이나 피의자권리와 관련된 도서를 「요구해 본 적 없다」는 대답이 30명으로 22%를 차지했다.

유치장 내에서 일반서적의 반입 및 독서가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 모든 경찰서에서 가능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보유하고 있는 서적의 수는 적게는 100권에서 많게는 500권 정도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일반서적 반입 및 독서에 대한 유치인들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유치장 내에서 일반서적의 반입 및 독서가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답한 유치인은 115명으로 83%를 차지했고, 「아니다」라고 답한 유치인은 불과 5명(4%) 정도였다. 이외에도 「가능은 하나 제한요건이 있다」라고 응답한 유치인도 13명(10%)를 차지했다.

〈표 9〉 일반서적 반입 및 독서에 대한 유치인들의 인식

유치장 내에서 일반서적의 반입 및 독서가 가능합니까?		
구 분	빈도(명)	비율(%)
그렇다	115	83%
아니다	5	4%
가능한 하나 제한요건이 있다.	4	3%
무응답	13	10%
합 계	137	100%

경산경찰서의 경우에는 각 도서에 고유번호를 부착하고 목록을 정리하는 등 유치장 내 도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서 청송 경찰서의 경우에는 일반 서적수가 상대적으로 타 경찰서 보다 적었으며, 영양 경찰서의 경우에는 출판년도가 상당히 오래되고 책표지가 누렇게 바래는 등 책 상태가 독서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유치장 내 신문을 구독할 수 있는가?²⁾라는 질문에 대해 유치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대용감방을 제외한 모든 경찰서 유치장에서는 신문구독을 신청하는 경우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유치장에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도 전무하였다. 따라서 대용감방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치장에서는 유치보호관이 보던 신문을 유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하는 경우가 유치인들이 유일하게 신문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였다.

유치장에 비치되어 있는 일상용품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유치인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찰서의 경우 대부분 칫솔, 치약, 비누, 수건 등을 비치되어 있는 일상용품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유치인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경찰서의 경우에는 대부분 모든 일상용품을 유치인 스스로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³⁾.

유치장에 비치된 일상용품에 대한 유치인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 보면, 유치장 내 비치된 일상용품은 주로 휴지, 치약, 칫솔, 비누, 수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남자 유치인에 비해 여자 유치인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생리대의 비치를 선택한 숫자가 가장 낮게 조사 되었다.

2) 『피구금지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39조에서는 「피구금자는 신문, 정기간행물 또는 시설의 특별간행물을 열독하고 방송을 청취하여 강연을 듣거나 당국이 허가하거나 감독하는 유사한 수단에 의하여 보다 중요한 뉴스를 정기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영양경찰서 등 몇몇 경찰서의 경우에는 치약, 비누, 수건 뿐만 아니라 칫솔까지도 유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영주 경찰서의 경우에는 이러한 일상용품 외에도 유치인들에게 냉장고에 보관된 찬물을 제공하거나 진공청소기 등을 비치하여 유치실 내부 청소를 용이하게 하고 있는 점 등은 유치인 보호관 스스로 인권증진과 보호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므로 타 경찰서 등이 참고할 바람직한 사례라고 생각한다.

〈표 10〉 유치장에 비치된 일상용품에 대한 인식

유치장에 비치되어 있는 일상용품은 무엇입니까? (모두 골라 주십시오)	
구 분	빈도(명)
수 건	59
비 누	62
칫 솔	60
치 약	58
휴 지	95
(여성의 경우) 생리대	6
기 타	10

3) 신체검사

신체검사 등과 관련하여 신체 등의 검사를 하기 전, 유치인에게 신체 등의 검사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스스로 위험물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가? 유치장 내 신체검사실 내에서 신체 등의 검사가 이루어지는가? 속옷을 벗는 정밀검사 때 탈의막 안에서 신체검사로 갈아 입도록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경찰서에서는 본 규정들을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지키고 있었다. 즉, 모든 경찰서에서는 유치장 내 신체 수색실을 갖추고 있었으며, 정밀검사시 필요한 남성용 및 여성용 신체검사의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으며, 탈의막도 잘 구비되어 있었다.

유치장에 들어갈 때 신체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 때 수치심을 느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가 40명(29%)를 차지했고, 「아니다」가 85명(62%)으로 나타났다.

〈표 11〉 신체검사에 대한 유치인들의 인식

유치장에 들어갈 때 신체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 때 수치심을 느꼈습니까?		
구 분	빈도(명)	비율(%)
그렇다	40	29%
아니다	85	62%
무응답	12	9%
합 계	137	100%

4) 여성 및 장애인의 처우

여성 피의자는 남성 피의자와 분리하여 유치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경북지역 모든 경찰서 유치장에서는 분리 유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영천경찰서의 경우에는 여성전용유치인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다. 경주경찰서의 경우에도 총 4개의 유치인실 중 2곳을 할애하여 각각 여성전용유치인실과 소년범 및 구류수 신체장애인 유치인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경주경찰서의 경우 전용실임

을 알리는 패찰을 달아두었다는 것은 상당히 특이할만한 것이었다. 영양경찰서의 경우에는 여성전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속옷과 배게 및 모포 등을 여성담당자를 지정하여 따로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경찰서에서는 이러한 전용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운영하기 힘들다고 답했다. 안동경찰서의 경우에는 여성전용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용실임을 표시하는 어떠한 패찰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더욱이 여성전용실이 다른 유치실과 시설과 운영에서 어떠한 차이점도 발견되지 않았다.

신체, 의복, 소지품 검사는 동성의 유치인보호관⁴⁾이 실시하고 있는가? 여성유치인보호관이 없는 경우, 여의사 또는 교양 받은 여성경찰관으로 하여금 대신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관내 모든 경찰서에서는 여성유치보호관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여성유치인에 대한 신체, 의복, 소지품 검사는 수사과 등에서 근무하는 여경이 순번을 정하여 필요시 투입되는 방법을 모든 경찰서에서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여성보호관의 역할을 대신하는 여자경찰관이나 여의사가 동성의 유치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 할 때 신체검사의 목적과 절차를 얼마나 잘 숙지하고 있으며, 사전에 이와 관련 된 교육이 얼마나 잘 이루어 졌느냐는 것은 결국 신체 검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아진다. 그러나 많은 경찰서의 경우 이와 관련된 여자경찰관에 대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아진다.

장애인에 대하여는 신체장애에 맞는 적절한 처우를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경찰서 유치장에서는 신체장애가 있는 유치인을 입감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신체장애인을 위한 시설물로는 휠체어와 목발, 그리고 장애인용 좌변기가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치장에서는 이러한 장애인용 편의시설물들을 후미진 곳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장시간 사용하지 않아서 먼지가 쌓여 있는가 하면 일부 장애인 좌변기의 경우, 녹이 쏘고 먼지가 쌓여있어서 그 형체가 너무도 추해 보였다.

그러나 아무리 장애인 편의시설물이나 장애인 전용실이 존재한다고 해도 관내 대부분의 경찰서에서는 유치장 바닥 면과 유치실 바닥 면의 간격이 높아 장애인들이 유치장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은 힘들어 보였다. 장애인이 유치장에 오면 기존 유치장 시설에서는 짧게는 2일부터 10일까지 불편한 일반 화장실을 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대소변도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영양 경찰서에서는 유치장 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유치장 바닥 면과 유치실 바닥

4) 2003년 1월 25일 개정된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8조 제2항에는 신체등의 검사와 관련하여 「여성유치인보호관이 없을 경우에는 여의사 또는 미리 지정하여 신체등의 검사방법을 교양 받은 여성경찰관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면의 간격을 1cm로 조정하여 유치실을 만든 것은 타 경찰서에 비해 모범적인 사례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좀 더 실질적인 장애인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004년 설치된 서울 송파 경찰서 내에 장애인 피의자만을 수감하는 종합적인 편의시설⁵⁾을 갖춘 전용 유치장을 참고할 만하다.

5) 수갑 등 계구 사용에 대한 문제

유치장에 들어갈 때 수갑이나 포승 등의 계구를 풀어 주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모든 경찰서에서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도주, 폭행 또는 자살, 자해 등의 방지 목적 외에 징벌이나 고통을 가할 목적으로 수갑과 포승이 사용되지 않는가? 수갑과 포승이 아닌 다른 계구를 비치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모든 경찰서에서 징벌이나 고통을 가할 목적으로 수갑과 포승은 사용하지 않으며, 수갑과 포승 이외의 계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영천, 포항북부, 경주경찰서의 경우에는 수갑과 포승 이외에 자해방지용 헬멧이 비치되어 있다고 대답하였다.

수갑과 포승에 대한 유치인들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치장에 들어갈 때 수갑이나 포승 등의 계구를 풀어 줘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116명(84%)를 차지했고, 「아니다」라고 답한 경우는 2명(1%)를, 「경우에 따라 다르다」라고 답한 유치인도 7명(6%)를 각각 차지했다.

〈표 12〉 수갑과 포승에 대한 유치인들의 인식

유치장에 들어갈 때 수갑이나 포승 등의 계구를 풀어줍니까?		
구분	빈도(명)	비율(%)
그렇다	116	84%
아니다	2	1%
경우에 따라 다르다	7	6%
무응답	12	9%
합계	137	100%

5) 서울 송파경찰서는 경찰서 내에 장애인 피의자만을 수감하는 종합적인 편의시설을 갖춘 전용 유치장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 유치장에는 좌변기와 목발 정도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구비됐지만 일반 피의자와 함께 입감되고 있는 실정으로 장애인 피의자만을 위한 유치장은 송파서가 처음이다. 2층짜리 유치장 1층에 기존 유치장 1칸을 개조해 만든 6.5평 크기의 이 장애인 전용유치장에는 병원에서 쓰이는 장애인용 침대를 비롯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대형 장애인용 화장실뿐 아니라 휠체어가 구비된다. 유치장의 문턱도 없애 휠체어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고쳤고, 일어설 때 붙잡을 수 있는 도보용 바(bar)까지 벽에 설치된다(연합뉴스, 2004. 3. 31).

6) 관식 및 사식

(1) 관식의 질과 제공방법에 대한 문제

『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과『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에서는 각각 「피구금자의 건강과 체력유지를 위해 적절한 급식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급식에 있어서 영양 및 위생에 관한 검사와 사식의 허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유치장에 식사가 제공되고 있는가? 제공되는 식사의 반찬은 평균 몇 가지 종류인가? 유치인은 자비로 취식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관내 모든 경찰서에서는 관식과 사식을 허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관식의 경우, 밥과 1식 3찬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관식비 단가는 일인 한끼 당 1,1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또한 유치인의 수에 따라 혹은 경찰서 자체의 구내식당 운영여부 등에 따라 관식과 사식의 제공 및 질은 경찰서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영천, 칠곡, 군위, 성주, 영양경찰서 등 유치인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자체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내식당에서 직원용으로 제공되는 급식을 유치인에게 그대로 제공하고 있어서 관식과 사식을 특별히 구분하고 있지 않고 있었다.

유치장에서 제공되는 반찬의 수에 대한 유치인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한 가지」라고 응답한 경우가 7명(5%)를 차지했고, 「두 가지」라고 응답한 경우는 68명(49%)를, 「세 가지」는 40명(29%)를, 「네 가지」라고 응답한 경우는 5명(3%)를 각각 차지했다.

〈표 13〉 반찬 수에 대한 유치인들의 인식

제공되는 식사의 반찬은 평균 몇 가지 종류입니까?		
구분	빈도(명)	비율(%)
한 가지	7	5%
두 가지	68	49%
세 가지	40	29%
네 가지	5	3%
무응답	17	14%
합계	137	100%

(2) 사식제공 및 가격

본 연구조사 결과, 관식의 질이 상당히 저급하므로 유치인들의 대부분은 사식을 선호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용감옥의 사식은 각 경찰서마다 가격이나 질에 있어서 편차가 조금씩 발생하였는데 사식비의 단가는 관식비를 포함하여 3,000원에서 45,00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다. 또한, 구내매점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은 각 지역 소비자 판매가격 보다 훨씬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장 내 식사에 대한 유치인들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식사가 전혀 제공되지 않아서 굶고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아무도 없었으나 「음식의 질이 나빠서 사식 또는 매식을 한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63명으로 46%를 차지하여 「식사가 제때 제공된다」라고 응답한 60명이 전체 응답자 중 44%를 차지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상당수의 유치인들이 저질의 관식 보다 사식이나 매식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표 14〉 유치장 내 식사에 대한 유치인들의 인식

유치장 내에서 식사가 제공됩니까?		
구 분	빈도(명)	비율(%)
식사가 전혀 제공되지 않아서 굶고 있다.	0	0%
식사가 제때 제공된다.	60	44%
시간이 지나서 식사를 준다.	4	3%
음식의 질이 나빠서 사식 또는 매식을 한다.	63	46%
무응답	10	7%
합 계	137	100%

7) 보건위생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에는 「날씨가 허락하는 한 매일 적어도 1시간의 적당한 실외 운동 보장과 운동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서는 「적당한 시간에 일광욕과 운동을 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유치장 설계표준 규칙』 제16조에는 유치장의 운동장설계에 대해 「운동장은 유치장 주변에 햇빛이 잘 들고 주의, 경비가 용이한 장소를 선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내 경찰서 중 유치인을 위해 운동시설을 갖춘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으며, 유치인에게 일광욕을 시키는 경우도 전무하였다. 따라서, 유치인에게 일광욕과 간단한 운동을 시키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관내 모든 경찰서에서는 유치인 스스로 알아서 유치실 내부에서 운동하는 것만을 허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30조 「보건위생」 제1항 2호 내지 7호에는 위에 언급했었던 일광욕과 운동에 대한 규정 이외에도 유치인의 보건 및 위생에 관련된 상세한 부분까지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당시 이러한 사항들을 제대로 지키는 경찰서는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의 경찰서에서는 본 사항들을 너무나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행정편의주의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월 2회 이상 이발을 실시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경찰서에서는 유치인이 최장 10일까지만 유치장에 체류하는 관계로 이발은 실시할 수 없다고 응답하거나 이발은 대용감방에서만 실시될 수 있다거나 혹은 이발을 요청한 사례가 없다는 등으로 응답했다.

매주 1회 이상 약품소독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안동, 울진경찰서 등은 매일 1회 약품소독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상주, 문경, 포항북부경찰서 등은 보건소 등에 의한 약품소독은 실시하지 않고 단지 매주 1회 자체소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영양 경찰서 등은 매일 1회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봉화와 김천경찰서 등은 매주 1회 보건소에서 약품소독을 하고 있다고 답하여 비교적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었다.

유치장의 청결상태에 대한 유치인들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깨끗하며 청소도 잘 되어 있다」라고 응답한 유치인은 51명(38%)를 차지했고, 「적당하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63명(46%)를, 그리고 「너무 더러워서 불쾌하다」가 10명(7%)를 응답하였다.

침구 등의 일광소독을 실시하여 기생충이 생기거나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포의 경우 관내 거의 모든 경찰서에서 취침 시 지급되었다가 아침에 수거하여 한꺼번에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모포의 재질 자체가 먼지가 많이 나고 모포를 따로 보관해 두는 장소를 확보하기보다는 시설적인 면에서 통풍과 일광에 문제가 많은 유치장 내 빈 유치실이나 신체검사실에 쌓아 두는 상태로 보관하고 있어서 악취가 나거나 눅눅한 경우가 많았다.

응급조치에 필요한 약품을 상비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관내 모든 경찰서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한 상비약 등을 11종에서 20종까지 보관하고 있었다. 상주경찰서의 경우에는 개인진료 후 받아온 약과 전체 유치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비약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었고 영덕경찰서의 경우에는 1주일에 두 차례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있었다.

〈표 15〉 유치장의 청결상태에 대한 유치인들의 인식

유치장의 위생 및 청결상태는 어떠합니까?		
구 분	빈도(명)	비율(%)
깨끗하며 청소도 잘되어 있다.	51	38%
적당하다.	63	46%
너무 더러워서 불쾌하다	10	7%
기타	3	2%
무응답	10	7%
합 계	137	100%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경상북도내의 경찰서 유치장과 대용감방 시설 및 운영에 있어서도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30조 제1항과 『유치장설계표준규칙』 제16조에서 각각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경찰서는 거의 없었다.

특히, 대용감방 유치장은 일반 경찰서 유치장과 시설이나 운영에 있어서 대동소이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청이나 법원 인근에 교도소나 구치소가 없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 유치장을 미결수 등 수감자들의 수용시설로 대체 운영되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몇 십 년 동안 존속되어오면서 수용인 인권의 사각지대로 현재까지도 존재하고 있다.

여기서는 앞서 유치인들에 대한 경찰서 유치장에 대한 인식분석을 근거로 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경찰서 유치장 시설

첫째, 유치장의 구조는 『유치장설계표준규칙』 제4조 제1항을 개정하여 유치장을 인권친화적인 일자형으로 배치하고, 여성 피의자와 남성 피의자를 분리하여 유치하는 한 개의 유치장이 아니라 여성·남성·장애인·소년범 등의 피의자를 차별하여 유치할 수 있는 다수의 유치장 시설을 확충하여 운영해야 한다.

둘째, 목욕장과 세면장 시설사용에 관해서는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30조 제1항 제2호에 「유치인에 대하여는 … 하절기에는 수시, 동절기에는 월 2회 이상 목욕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목욕 시간은 15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경북지역 모든 경찰서 유치장에는 유치실 외부에 목욕장과 세면장 시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치인들은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유치인들에게 시설의 존재를 충분히 고지하여 유치인들의 사용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유치실 내부의 차폐막 시설에 대해서는 비록 2001년 7월 19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차폐막 시설을 화장실 바닥에서 1미터 이상 유지하도록 조치하였다고는 하나 차폐막 높이에 대한 유치인들의 불만이 많으므로 - 특히 여성유치인의 경우 - 차폐막 높이에 대한 규정을 좀 더 상향조정하든지 아니면 자해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힘든 경우에는 화장실 바닥으로부터 1미터 정도까지는 불투명 재질로 하고, 그 이상은 반투명 재질로 설치하여 유치인에 대한 불평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조사당시 비상재해 시설 중 비상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주, 영천, 영주, 봉화경찰서의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비상구를 설비해야 하며, 수용된 유치인수와 내부면적에 비해 소화기를 충분히 비치하지 못한 경찰서의 경우에는 수용인원과 내부면적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소화기를 확보하여 비치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유치장 내 통풍 및 채광의 문제에 관해서는 유치장 실내면적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기청정기나 환풍기 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여 가동하여야 할 것이다. 외부의 공기를 유치장 내부로 순환할 수 있도록 유치실 내부 및 유치장 내부에 적절한 수의 창문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유치장이나 유치실 내부의 조명을 지나치게 인공조명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자연채광을 확보하여 더욱 인권친화적인 조명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유치장 내 냉·난방 시설의 경우에도 유치장에 수용된 유치인의 수와 유치장의 규모에 합당하는 냉·난방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2. 경찰서 유치장 운영

1) 피의자 유치절차와 처우

유치장 운영의 문제는 단순히 독자적인 문제로 다루어질 것이 아니라 유치장 시설의 낙후함 등과 함께 다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피의자를 일시적으로 구금하는 경찰서 유치장 본래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서 또는 구금을 당하고 있는 유치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예산확보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피의자 유치절차에 있어서는 유치인의 입감 시 유치장 내 일과표, 접견, 연락절차,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충분한 고지가 이루어지도록 유치인 보호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유치인에 대한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지 이후 이행사항에 대해 유치인보호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문서상의 기록표 등도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다. 또한 유치장 벽면의 의무 게시물인 유치인표 준일과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안내서, 식단표, 근무자 근무수칙 등은 유치실 정면에서 바라볼 때에 유치인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피의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변호사 접견권, 법률구조공단 제도, 당직변호사 제도, 법전의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해 고지하는 것이 유치인보호관의 의무사항은 아니라 하더라도 유치인들이 유치장 내에서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권보호 시스템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는 것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있어서 중요하다.

2) 열독, 생활필수품 지급 및 신체검사

열독에 대한 문제는 낡고 오랜 된 책들은 폐기하고 신간으로 교체하거나 도서를 좀 더 추가하고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는 잡지 등을 구비하는 것이 유치인들의 열독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유치장에 비치되어 있는 일상용품과 관련하여 유치인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대용감옥 등에서는 유치인 스스로가 생활필수품 등을 자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치된 피의자 중에는 생계가 곤란한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본적인 생필품 등은 유치장에 구비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일부 경찰서에서는 낡고 오랜 된 유치장 시설과 맞물려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 되었는데, 신체수색실이 상대적으로 협소하여 유치인으로 하여금 정신적 강박감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노후 된 시설을 바꾸어야 할 것이며, 신체수색실이 기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이 요구된다. 또한, 항상 최상의 청결상태를 유지하여 유치인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3) 여성 및 신체장애인의 처우

현재 경북지역에서는 상주경찰서가 유일하게 여성전용 유치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러한 여성전용 유치실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며 빠른 시일 내에 여성유치보호관 인력을 확충하여 여성 유치인들에 대한 신체검사 및 송치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하여 여성유치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 목발이나 휠체어, 이동식 좌변기 등과 같은 장애인관련 시설물들을 보관할 필요가 있다.

4) 수갑 등 계구사용과 관식·사식, 보건위생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22조 2항에 따르면 「수갑과 포승을 제외한 일체의 계구는 유치장내에 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영천이나 포항북부 혹은 경주경찰서와 같이 수갑과 포승 이외에 보관하고 있던 자해방지용 헬멧 등은 즉시 회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22조 2항을 개정하여 유치장 내 일체의 계구를 비치할 수 없도록 하여 징벌이나 고통을 가할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관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의 확보가 절실하다.

또한, 현재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30조 제1항과 『유치장설계표준규칙』 제16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각 경찰서 유치장에서는 유치인들의 건강 및 보건

의료를 위한 조치를 충실히 행하여야 하며, 유치인을 대상으로 일광욕과 외부운동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약품소독 및 침구 등의 일광소독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세탁을 통해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다. 특히, 모포관리는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유치인을 수용하고 있는 대용감방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모포는 일정기간의 세탁시점을 정하고 세탁한 모포와 세탁하지 않은 모포를 따로 관리하며, 가능하면 개인별 모포관리가 가능한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고시면(2002), “경찰서 유치장 수용과정에서 알몸수색으로 인한 형사피의자의 피해
자화에 대한 고찰”, 『한국피자학회』 제10권 2호.
- 국가인권위원회(2004), 『대용감방 처우 및 운영관련 정책권고』
- 권용보 외, 교도소 인권모임(2002), 『유치장 시설환경 인권실태 조사보고서』, 인권
상황 실태조사 용역 사업 보고서
- 김수원(2002), “경찰의 인권보호 향상방안 - 경찰서 유치장 실태와 관련하여”,
『사회과학연구』 제28권,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김태명(2004), “미결구금시설로서의 경찰서 유치장제도”, 『형사정책연구』 제15권
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태명(2005), “일본의 대용감옥에 대한 논쟁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경찰서 유치장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찰학연구』 제9호, 경찰대학.
- 김형훈(2002), “일본 유치장 탐방 : 일본 경찰청 홈페이지를 다녀와서”, 『경찰학연
구』 제2호, 경찰대학.
- 신용해(2005), “경찰서 유치장 및 대용구치시설 관련 판례 연구”, 『교정』, 제49권
9호(353호), 한국교정협회.
- 임준태(2001), “각국의 유치장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치안논총』 제17집, 치안연
구소.
- 임준태(2002), “유치장내 질서유지와 신체수색의 한계 - 미국과 영국 경찰사례를 중
심으로”, 『형사정책』 제14권 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 장규원(2000), 유치장 관리 개선을 위한 방향 - 국제인권기준을 중심으로, 『수사연
구』 2000년 12월호.
- 장영민·박기석(1995),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국(2000),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형사피의자에 대한 신체검사”, 『형사정책연
구』 제11권 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세계일보』, 2005년 8월 9일
- 『연합뉴스』, 2005년 3월 31일

ABSTRACT

A Study of Detainees' Perceptions of the Detention Facilities of the Police Station and their Operation

Jung, Woo-Yeoul · Park, Dong-Kyun · Kim, Do-Kyun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detention facilities of police stations and their real operations through the perceptions of detainees at police station cells and to present the policy suggestions for them. To fulfill the research, a questionnaire was made out on the basis of 'the Regulation on Detention and Escort for Suspects', 'the Regulation on a Standard Plan for Detention Facilities' and 'the Regulation on the Lowest Standard to Treat Detainees'; and detainees at 23 police station cells under the jurisdiction of Kyungbuk Local Police Agency were asked to answer it.

Policy suggestions following from the result of the investigation of detainees' perceptions of the detention facilities of the police stations are as follows; Firstly, the structure of police station cells should be arranged in straight lines in order to take their human rights into consideration and more detention facilities are needed to be built in order to separate male, female, handicapped and juvenile inmates. Secondly, shower rooms and washrooms outside the cells should always be open to detainees whenever they need to be used. Thirdly, any detention facilities deficient in fire fighting equipment should have exit doors installed as soon as possible in case of an emergency and provide sufficient fire extinguishers considering the number of detainees and the size of the facilities. Fourthly, the detention facilities should have sufficient windows for ventilation and take necessary measures to obtain natural lighting instead of electric lighting. Fifthly, air conditioners should be equipped properly taking account of the number of detainees and the dimensions of the facilities.

Policy suggestions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investigation of detainees' perceptions of the operation of detention facilities of police stations are as follows; Firstly, the problem of operating the detention facilities must deal with worn-out facilities and measures to secure the budget should be taken as soon as possible. Secondly, considering that most detained suspects have difficulties in

livelihood, daily necessities must be issued to them. Thirdly, personal belongings deposited by inmates must be properly managed with the same documentation throughout the police station detention facilities. The number of female guards to take exclusive charge of the physical checkups and processing of female detainees should be increased. Also the facilities for handicapped detainees must be expanded, improved and managed properly. Fourthly, except for handcuffs and ropes to bind detainees in the detention facilities, helmets to prevent self-harm must be withdrawn. The budget to improve the quality of meal issued by the government must be urgently secured and the price of private food sent to detainees must be readjusted to be in line with the consumer price. Health and medical care and sanitation for detainees must be substantial, and also sunbathing and outdoor exercises should be allowed to detainees.

Key Words: Police Station, Detainees, Human Rights, Detention Facilities, Inmates